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제4조(적용 대상자)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7조(보상 원칙)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9조(품위 유지 의무)

제2장 예우

제10조(의식상의 예우)

제11조(보훈급여금)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제12조(보상금)

제13조(사망일시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 • 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16조의2(생업지원)

제17조(의료지원)

제18조(대부)

제19조(양로지원)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제20조(양육지원)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25조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제3장 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1조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4장 보칙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7조

제38조(보상의 정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5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과태료)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활안정지원금) 044-202-5421, 5411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국내 정착 지원) 044-202-57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豪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 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3. 28.]
-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6., 2012. 2. 17., 2015. 12. 22.>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배우자
- 2. 자녀
-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 12. 22.>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개정 2015. 12. 22.>
-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개정 2015. 12. 22.>
-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2023. 3. 4.>
 - ③ 삭제<2015. 12. 22.>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2023. 3. 4.>

-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1. 사망한 경우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 5.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 6.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3. 3. 4.>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5. 12. 22.]

제7조(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9조(품위 유지 의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장 예우 <개정 2008. 3. 28.>

제10조(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11조(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 ② 삭제<2015. 12. 22.>
 -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2.>
 - ④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제12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⑤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22.>

-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②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개정 2014. 5. 21., 2019. 12. 10.>
-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 5. 21.>
-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삭제<2015. 12. 22.>
-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2014. 5. 21. 법률 제12668호에 의하여 2013. 10.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항 및 제4항제1호를 개정함]

- **제13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수 있다.

-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1. 독립유공자
 -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②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4.>
 - ④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 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 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 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3. 3. 4.>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 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3. 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4.>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 신청절차 및 지원금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 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8. 4. 6.]

- 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22.>
 -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 12. 22.>
 - ④ 삭제 < 2015. 12. 22.>

-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22.>
 - 1. 순국선열의 유족
 -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加點)하여야 한다.

-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애국지사의 가족
 -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 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개정 2009. 2. 6., 2015. 12. 22., 2017. 10. 31.>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개정 2015. 12. 22.>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2023. 3. 4.>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신설 2012. 2. 17,, 2023. 3. 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2. 17., 2023. 3. 4.>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의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2. 17.,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대부)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개정 2018. 12. 31.>

-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족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2.>
-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12. 22.>

제19조(양로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3. 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4.>
 -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9. 4. 30.]
-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0조(양육지원)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30.>
 - 1. 독립유공자
 -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 3. 제26조에 따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②「주택법」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17. 12. 30.>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30., 2023. 3. 4.>

[전문개정 2015. 12. 22.]

제25조 삭제 <2005. 7. 29.>

-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독립유공자
 -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전문개정 2015. 12. 22.]

-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26., 2023. 3. 4.>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1. 1. 26., 2023. 3. 4.>

[본조신설 2017. 10. 31.]

[제목개정 2021. 1. 26.]

제3장 기금 <개정 2008. 3. 28.>

-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4. 6.>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1. 25.>
 -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 4. 정부의 출연금
 -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3. 3. 4.>

②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보훈기금법」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4. 6.>

-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 삭제 <2005. 12. 29.>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 3. 4.>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 3. 4.>

제33조의2 삭제 <2006. 12. 30.>

제33조의3 삭제 <2006. 12. 30.>

제34조 삭제 <2002. 12. 30.>

제4장 보칙 <개정 2008. 3. 28.>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5. 12. 22., 2016. 5. 29., 2018. 4. 6., 2021. 6. 8., 2023. 1. 17., 2023. 3. 4.>

1.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1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수업료·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
- 3.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 3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 4. 제1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 5.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보조금
- 6.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 7. 제26조에 따른 정착금
- 8. 제1호의2에 따른 지원금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 1. 17, 2023. 3. 4.>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 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2023. 1. 17.,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2023. 1. 17.,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2023. 7. 18.] 제35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37조 삭제 <2000. 12. 30.>

제3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

- 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4.>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2., 2023. 3. 4.>

-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5. 12. 22., 2016. 1. 6., 2017. 10. 31., 2017. 12. 30., 2021. 4. 20., 2021. 6. 8., 2023. 3. 4.>
 -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2. 「형법」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3.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가. 「형법」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 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 사. 「군사기밀 보호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 아. 「전기통신사업법」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6.「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 7.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2., 2023. 3. 4.>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2. 6., 2015. 12. 22., 2016. 5. 29., 2023. 3. 4.>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2. 삭제 < 2009. 2. 6.>
-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독립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3. 3. 4.>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23. 3. 4.>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4. 6., 2021. 1. 26., 2023. 3. 4.>

- 1.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 2. 제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 4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 5.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
- 6.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 8.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9. 제24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 9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 10.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 11.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 12.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6. 8., 2023. 3. 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7, 10, 31, 2023, 3, 4.>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2023. 3. 4.>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장 벌칙 <개정 2008. 3. 28.>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10. 31., 2017. 12. 3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 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5. 12. 22.>
- ③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31.> [전문개정 2008. 3. 28.]
- 제44조(과태료)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18. 4. 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2. 6.>
 - 1.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3.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 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제19228호,2023. 3. 4.>(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③ 까지 생략

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의3제1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7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 후단,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전단, 제26조의2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의2,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7조제7항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 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46 까지 생략

제8조 생략